

광주지방법원 2021. 3. 5 선고 2020가단5478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 2021. 3. 5.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7. 체결된 증여계약은 36,733,1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733,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강애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 1) 소의 B는 2010. 9. 12.(개업일)부터 2016. 10. 31.(폐업일)까지 건설업/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자입니다. (갑 제1호증 법인 기본사항조회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 원고는 소의 채납자 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A는 소의 B의 배우자입니다. (갑 제2호증 채납유무조회, 갑 제3호증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증명서)
- 3) 소의 B는 2017. 11. 17.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22.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증여계약서, 갑 제5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1> 소의 B의 2020.9. 현재 국세채납액

(단위: 원)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 기한	채 납 액			비고
				합 계	본 세	(중)가산금	
법인세	2016년	'16.11.16.*	'17.12.12	6,756,940	4,565,670	2,191,270	피보전 채권
종합 소득세	2013년	'13.12.31.	'18.11.15.	26,977,430	22,632,090	4,345,340	
	2016년	'16.12.31.	'18.11.15.	2,998,740	2,515,880	482,860	
소 계				36,733,110	29,713,640	7,019,470	
부가세	2013년	'18.04.01.*	'18.05.09.	31,939,750	24,885,010	7,054,740	사해행위
법인세	2013년	'18.06.01.*	'18.06.27.	20,639,210	16,386,870	4,252,340	이후 생성 채납
합 계				89,312,070	70,985,520	18,326,550	

* 원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D의 채납발생일

2.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의 성립

- 1) 우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참조) 라고 하여, 비록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지를 하고 있습니다.
- 2) 주식회사 D은 2016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분(과세기간 : 1.1. ~ 6.30.)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이에 2016. 10. 4. 원고 산하 북광주세무서장이 4,565,674원을 2016. 11. 15.을 납기로 고지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D은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6. 11. 16.에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법인세 중간예납 결정결의서 및 징수결정상세조회)
- 3) 주식회사 D이 위 2)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6. 10. 31. 폐업하자, 원고 산하 북광주세무서장은 2017. 11. 22. 소외 B를 주식회사 D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7. 12. 12.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갑 제7호증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내역 조회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징수결정상세조회)
- 4) 소외 B는 위 2)와 같이 지정된 금액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포함 6,756,940원을

채납하고 있습니다. (갑 제2호증 채납유무조회 참조)

- 5)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의 소외 B 대한 조세채권은 위 2)과 같이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원납세의 무자인 주식회사 D이 채납한 때에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위 3)와 같이 소외 B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 6) 또한, 소외 B는 2013년 및 2016년 귀속 주식회사 D의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 산하 서광주세무서가 2018. 10. 16. 종합소득세 2건을 고지결정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가산금 4,828,200원을 포함하여 29,976,170원을 채납하고 있습니다.(갑 제8호증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징수결정상세조회 각2부)
- 7) 이와같이 소외 B에 대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총 36,733,110원입니다.(갑 제2호증 소외 B 채납유무조회 및 표1 소외 B의 2020.9. 현재 국세채납액 참조)

3. 사해행위

소외 B는 주식회사 D이 채납됨에 따라 주식회사 D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임을 예상하고, 원고의 압류 등 채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7. 11. 17.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22.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99901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습니다. (갑 제5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4. 소외 B의 사해의사 및 채무초과

1) 사해의사

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 82360 판결 등)

나. 소외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2017. 11. 17.(사해행위일) 이전에, 본인이 과점주주이자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의 재산으로는 채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는 사정과 주식회사 D이 채납된 경우에 본인이 당해 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그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갑 제1호증 법인 기본사항조회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다. 소외 B는 주식회사 D이 채납된 경우에 당해 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그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본인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으로써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2) 책임재산의 감소 및 채무초과 심화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

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나. 소외 채납자 B는 피고 A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해당 금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소외 B가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증여를 할 2017. 11. 17. 당시, B의 적극재산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342,219,545원이고 소극재산은 조세채무 36,733,110원을 포함하여 315,833,110원으로 증여 당시에는 적극재산이 26,386,435원을 초과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습니다.(갑 제9호증 적극재산·소극재산 내역 및 B 재산현황표)

5.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피고는 소외 B의 배우자로 소외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을 당시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부과될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가 있는 소외 B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리라는 사실 및 소외 B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소외 B에 대한 국세채납정리를 위해 재산현황을 검토하고자 재산현황표를 출력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외 B가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0. 9. 4. 소외 B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열람을 요청하여 확인한 후 피고가 소외 B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를 안 날은 2020. 9. 10.입니다.

(갑 제3호증 B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참조)

7. 가액배상

- 1) 소외 B와 피고 사이의 2017. 11. 17.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증여된 부동산을 원물반환시키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해행위로서 소외 B에게 취득한 후 2017. 11. 22. 피고를 채무자로 E조합에게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같은날 F조합에게 채권최고액 33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하여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또한 말소등기에 대한 동의를 기대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 2) 그러므로 원고의 피보전 조세채권 36,733,110원이 사해행위일 당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가액 82,500,000원에 미달하므로 36,733,110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에게 위 36,733,110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갑 제9호증 적극재산·소극재산 내역 및 B 재산현황표 및 제10호증 소가산정내역서)

8.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소외 B가 별지목록 부동산을 피고 A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6,733,11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가액배상을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광역시 서구 G에 있는 H아파트 1동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J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K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면 적 1층 L호 133.890㎡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광주광역시 서구 G 대 35605㎡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35605분의 68.495

- 이 하 여 백 -